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15
------------	-------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의자 : 인재근 · 김영진 · 윤영덕
김민기 · 서영석 · 소병훈
최종윤 · 허영 · 박상혁
김성환 · 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는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임.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의 위임 받은 대리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증 동의 등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 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

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료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읍·면의장(이하 “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읍·면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8조의2(자료요구) 국립장기이 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 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 1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동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읍· 면의 장(이하 “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하여 야 한다.</p>